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두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8.

발 의 자: 윤두현・권명호・金炳旭

추경호 • 김정재 • 김용판

유상범 · 김석기 · 곽상도

윤주경·양금희·최춘식

윤재옥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종 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 가 거세지고 있음.

대면수업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임.

그러나 대학들은 원격수업 등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를 감안하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 어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학생과 학부 모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임.

이에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으로 학생들에 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또 는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 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6조제3항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	③
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	
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	
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	
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	
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	
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	
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	
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	
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	
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	
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	
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
	<u>는 감면</u>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